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47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이성윤・박지원・양부남

김문수 · 김병주 · 김현정

민형배 · 박희승 · 서미화

추미애 • 김윤덕 • 서영교

윤준병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,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, 명품 가방 수수 사건,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,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,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,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,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, 명태균 관련 사건,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,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, 국가기밀정보 유출 사건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.

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, 김건 회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, 수사기관 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.

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,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,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, 명품 가방 수수 사건,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,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,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,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,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 거 개입, 명태균 관련 사건,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,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,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 위임(안 제2조).
- 다.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,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

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,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,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(안 제3조).

- 라.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,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,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(안 제6조 및 제8조).
- 마.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(안 제7조)
- 바.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,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9조).
- 사.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나,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

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,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
- 아.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- 자.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특별검사의 수사대상)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.
 - 1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, 주식 회사 삼부토건, 주식회사 우리기술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였다는 의혹 사건
 - 2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 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 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
 - 3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 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
 - 4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, 명태균과 제 20대 대통령 선거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, 2022년 재보궐선거,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 경선 또는 공천 과정에서 불법 여론

조사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고, 2022 년 대우조선파업 관여·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(창원산단) 지 정 등 각종 기관 인사와 정부 주요 정책 결정 등에 불법적으로 개 입하였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

- 5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
- 6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
- 7.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, 대통령실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,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 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·해태·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 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
- 10.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
-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,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

회피하여야 한다.

- 제3조(특별검사의 임명)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 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 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「국회법」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1명, 비교섭단체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한다.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.
 -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,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- 제4조(특별검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 무원
 - 3.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
 - 4.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
 - 5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로 등록한 사람
 - 6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제5조(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)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,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6조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
 - 2.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
 -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·조사할 수 없다.

-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, 대검찰청, 경찰청, 국방부검찰단, 각 군 검찰단, 군 사경찰단, 대통령경호처, 금융감독원 등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과 압수, 수색, 체포, 구속 등 수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관계 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, 대검찰청, 경찰청,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이내,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「형사소송법」, 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, 「군사법 원법」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.

- 제7조(공소유지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)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 지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,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.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 ① 특별검사는 「법원조직법」 제42 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 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.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.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.
 -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·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·

감독을 한다.

-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명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, 특별 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.
-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특별검사등의 의무) ① 특별검사,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(이하 "특별검사등"이라 한다)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4항·제5항,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

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- ⑤ 「형사소송법」, 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, 「군사법 원법」,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 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.
- 제10조(수사기간 등)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,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,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.
 - ② 특별검사는 수사를 위한 시설·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기한을 정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특별검사가 요구한 예산을 요구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③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,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특별검사는 제4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

- 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,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, 대통령은 제4항의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승 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⑦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, 그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.
-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.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.
- 제11조(재판기간 등)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,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제361조, 제361조의3제1항 · 제3항,

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 · 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.

- 제12조(사건의 처리보고)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이 비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건의 대국민보고)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 다.
- 제14조(보수 등)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.
 -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.
 -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.
 -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5조(퇴직 등)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,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

-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,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한다.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·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,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16조(해임 등)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.
 - 1.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
 - 2.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
 - 3.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
 - 4.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

제2항 후단을,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.

-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(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)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.
- 제17조(신분보장)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- 제18조(회계보고 등)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,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재판권 및 재판관할)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서는 「군사법원법」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.

-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.
- ③ 제7조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검사가 이첩받기 전에 이루어진 다른 조사·수사기관의 조사, 수사,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행위가 이 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검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.
- 제20조(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)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,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「형사소송법」 제110조, 제111조,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국가정보원과 국방부, 합동참모본부, 각 군, 대통령비서실, 대통령경호처는 「국가정보원법」,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, 수색 또는 검증 등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.
- 제21조(이의신청)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동거인,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,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

- 1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,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.
- 2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- 1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.
- 2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.
-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.
-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

- 있고,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2조(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)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인력을 인계한다. 이 경우 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에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 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수있다.
- 제23조(벌칙)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제24조(벌칙)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

- 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5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제10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) 이 법의 실효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제4조(공소시효의 정지)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.